

2. 제18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4. 제27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5.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경우
6. 제32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7.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8.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8조(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그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자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6장 경영의 합리화

**제39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운수사업자는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경영관리의 건전화, 화물운송 기법의 개발 등 경영 합리화와 수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4항에 따라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③ 운송사업자와 위 · 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15.>](#)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량소유자 · 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 · 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5., 2013. 3. 23., 2014. 5. 28., 2018. 4. 17., 2020. 6. 9.>](#)

⑤ 제3항에 따른 위 · 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⑥ 시 ·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 · 수탁계약의 체결 · 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5., 2014. 5. 28.>](#)

⑦ 제3항에 따른 위 · 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5. 6. 22., 2020. 6. 9.>](#)

1. 운송계약의 형태 ·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2.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3.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민법」 및 이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